



2025. 4. 21.

2024회계연도 논산시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 산 검 사 의 건 서

논산시결산검사위원

2024회계연도 논산시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수신 : 논산시장

제목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

2024회계연도 논산시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5년 4월 7일 ~ 4월 21일(15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김 중 욱(논산시 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박 찬 해(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서 형 욱(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이 지 웅(세무사)
- 검 사 위 원 : 황 인 용(세무사)

붙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논산시결산검사위원

결 산 검 사 의 건 서

논산시장 귀하

2025년 4월 21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논산시 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회계연도 논산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2025년 4월 7일부터 2025년 4월 21일까지(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4회계연도 논산시의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논산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논산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불임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논 산 시 결 산 검 사 위 원

대 표 검 사 위 원	김	종	욱
검 사 위 원	박	찬	해
검 사 위 원	서	형	욱
검 사 위 원	이	지	웅
검 사 위 원	황	인	용



목 차

I. 검사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	21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25
1. 논산시 재정의 현황	27
2. 세입·세출 결산	29
3. 기금 결산	39
4. 재무제표의 결산	41
5. 성과보고서	43
6. 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결산	45
III. 개선 및 권고사항	47
IV. 수범사례	185

I. 검사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

1.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증빙자료 대조, 현지 확인, 금고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검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2. 결산검사기간 : 2025. 4. 7. ~ 4. 21.(15일간)

3. 결산감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김 중 욱	세입, 세출결산 총괄	논산시의회 의원
위 원	박 찬 해	성과보고서, 특별회계, 공유재산, 물품	전직 공무원
위 원	서 형 욱	세출전반, 예산이용·전용, 예비비	전직 공무원
위 원	이 지 웅	세입전반, 기금, 채권, 채무	세 무 사
위 원	황 인 용	재무제표 전반, 건의·수범사례	세 무 사

4. 중점검사내용

가. 세입 분야

- 1)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 여부
- 2) 과세관련자료 적정 여부
- 3) 체납액 정리 및 적법 결손처분의 여부
- 4) 효율적인 자금 관리여부 및 운용 실태

나. 세출 분야

- 1) 세출예산의 적법편성 및 집행, 결산의 정확성 여부
- 2) 이월 예산 및 예산 이용, 전용의 적정 여부
- 3) 불용액에 대한 타당성 검사

다. 기금 결산

- 1) 기금 관리 운영의 적정성 여부

라. 재무제표

- 1) 재무제표 검토인의 적격성 및 검토절차의 적정성 확인 여부
- 2)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의 수정방안 및 개선 대안 제시 확인

마. 성과보고서

- 1) 성과관리 체계의 적합성, 성과지표 타당성, 측정방법 적합성, 목표치의 적정성 확인
- 2) 성과실적의 신뢰성, 실적치의 적합성, 실적치 측정 타당성 확인

바. 채권, 채무 관리

- 1) 채권·채무 관리의 적정 여부
- 2) 채무 변제의 이행 실태

사. 재산 및 기금, 물품 관리

- 1) 공유재산 관리 실태 및 대장 등재 여부
- 2) 정수 물품 관리 실태 및 현재액보고서와 일치 여부

아. 금고의 결산

- 1) 세입·세출회계별 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 여부
- 2) 수입계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과의 상호 부합 여부

위 내용 외에 시정 또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별도 후술하였습니다.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논산시 재정의 현황

가.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세 입 (수 입)	1,176,754,098	1,275,337,066	1,429,395,497	1,340,327,710	1,402,022,357
	세 출 (지 출)	935,335,172	1,014,161,954	1,182,562,064	1,100,655,989	1,136,628,260
	결산상잉여금	241,418,926	261,175,112	246,833,433	239,671,721	265,394,097
일반회계	세 입	1,022,752,875	1,134,126,529	1,298,965,605	1,227,556,965	1,300,478,539
	세 출	826,279,379	917,245,970	1,080,856,818	1,015,924,620	1,061,609,997
	결산상잉여금	196,473,496	216,880,559	218,108,787	211,632,345	238,868,542
특별회계	세 입	154,001,223	141,210,537	130,429,892	112,770,745	101,543,818
	세 출	109,055,793	96,915,984	101,705,246	84,731,369	75,018,263
	결산상잉여금	44,945,430	44,294,553	28,724,646	28,039,376	26,525,555

최근 5년간 평균 세입은 4.5%, 세출은 5.0%, 잉여금은 2.4%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액은 4.6%(61,694,647천원), 세출결산액은 3.3%(35,972,271천원), 결산상잉여금은 10.7%(25,722,376천원) 증가하였음.

세출결산액을 2024.12.31.기준 주민수 108,529명으로 나눈 “1인당 재정 지출규모”는 10,473천원임.

논산시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차 입 금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논산시 최근 3년간 차입한 사실이 없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0원임.

2. 세입·세출 결산

가. 총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1,396,644,242	1,402,022,357	1,136,628,260	265,394,097
일반회계	1,296,733,295	1,300,478,539	1,061,609,997	238,868,542
특별회계	99,910,947	101,543,818	75,018,263	26,525,555
공기업	86,597,260	87,830,530	63,326,827	24,503,703
기 타	13,313,687	13,713,288	11,691,436	2,021,852

회 계 별	결 산 상 잉 여 금 명 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합 계	91,656,201	21,379,778	94,282,328	16,853,203	41,222,587
일반회계	85,523,540	20,218,173	85,081,535	14,118,153	33,927,141
특별회계	6,132,661	1,161,605	9,200,793	2,735,050	7,295,446
공기업	6,132,661	1,112,606	8,753,022	2,563,748	5,941,666
기 타	0	48,999	447,771	171,302	1,353,780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02,022,357천원으로 예산현액 1,396,644,242천원보다 5,378,115천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1.1%인 1,136,628,260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65,394,097천원임.

이중 명시이월비 91,656,201천원, 사고이월비 21,379,778천원 및 계속비 94,282,328천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6,853,203천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1,222,587천원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 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41,222,587천원임이 확인되었음.

나. 일반회계

1) 세입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결산액	1,296,733,295	1,321,376,279	1,300,478,539	1,714,828	19,182,912
결산확인액	1,296,733,295	1,321,376,279	1,300,478,539	1,714,828	19,182,912
차액	0	0	0	0	0

수납액 1,300,478,539천원은 예산현액의 100.3%로서 3,745,243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4%이며, 정리보류액은 1,714,828천원임.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300,478,539	1,300,478,539	0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율
2024	1,296,733,295	1,321,376,279	1,300,478,539	1,714,828	19,182,912	98.4%
2023	1,221,197,285	1,248,093,272	1,227,556,965	1,304,523	19,231,784	98.4%
증감	75,536,010	73,283,007	72,921,574	410,305	△48,872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1,296,733,295	1,321,376,279	1,300,478,539	1,714,828	19,182,912
자체 수입	소 계	107,678,499	133,090,348	112,198,902	1,714,828	19,176,618
	지 방 세	77,362,000	85,639,360	79,284,488	1,404,497	4,950,375
	세 외 수 입	30,316,499	47,450,988	32,914,414	310,331	14,226,243
이전 수입	소 계	1,189,054,796	1,188,285,930	1,188,279,637	0	6,294
	지 방 교 부 세	417,474,111	417,474,111	417,474,111	0	0
	조정교부금등	34,150,000	35,426,009	35,426,009	0	0
	보 조 금	450,216,564	446,341,165	446,341,165	0	0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287,214,121	289,044,645	289,038,352	0	6,294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은 전년도 1,227,556,965천원보다 72,921,574천원이 많은 1,300,478,539천원이 수납되어 5.9% 증가.
- 정리보류액은 전년도 1,304,523천원보다 410,305천원 증가한 1,714,828천원이며 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809,505천원, 평가액부족 538,768천원, 소멸시효 완성 145,864천원 등임.
-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6.1%인 79,284,488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2,914,414천원, 지방교부세는 32.1%인 417,474,111천원, 조정교부금등은 35,426,009천원, 보조금은 446,341,165천원 수납되었음.

2) 세 출

일반회계 세출 결산 확인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결 산 액	1,146,455,122	1,296,733,295	1,061,609,997	190,823,248	44,300,050
결산확인액	1,146,455,122	1,296,733,295	1,061,609,997	190,823,248	44,300,050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1,146,455,122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50,278,173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296,733,295천원임.
- 세출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총2건, 162,000천원을 예산 범위 안에서 단위사업 간 전용하여 사용함.
- 이체는 53,045,601천원으로서 업무이관과 조직개편 등에 기인함.
- 예비비 예산액은 6,404,406천원으로서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33건 6,402,51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5,885,708천원을 지출하였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9%에 해당하는 1,061,609,997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90,823,248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85,523,540천원, 사고이월액은 20,218,173천원, 계속비이월액은 85,081,535천원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4%에 해당하는 44,300,050천원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061,609,997	1,061,609,997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과목	2023회계연도 집행액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계	1,015,924,620	1,296,733,296	1,061,609,997	81.9	45,685,377	4.5
일반공공행정	87,162,811	58,878,675	52,690,777	89.5	△34,472,034	△39.5
공공질서및안전	11,332,540	16,794,983	10,832,725	64.5	△499,815	△4.4
교육	10,745,913	16,071,184	11,869,628	73.9	1,123,715	10.5
문화및관광	56,784,669	88,969,477	62,968,375	70.8	6,183,706	10.9
환경보호	58,368,280	61,257,989	53,874,208	87.9	△4,494,072	△7.7
사회복지	285,444,114	315,798,557	307,716,254	97.4	22,272,140	7.8
보건	35,186,317	46,483,057	36,319,800	78.1	1,133,483	3.2
농림해양수산	170,472,141	233,681,758	190,573,881	81.6	20,101,740	11.8
산업·중소기업	32,164,949	37,170,689	34,115,339	91.8	1,950,390	6.1
수송및교통	44,089,764	62,882,478	49,257,437	78.3	5,167,673	11.7
국토및지역개발	106,947,362	236,603,664	131,094,649	55.4	24,147,287	22.6
예비비	0	0	0		0	0
기타	117,225,760	122,140,785	120,296,924	98.5	3,071,164	2.6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307,716,254 천원, 농림해양수산 190,573,881 천원, 국토및지역개발 131,094,649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및지역개발(22.6%), 농림해양수산(11.8%), 수송및교통(11.7%) 등 임.

다. 특별회계

1)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99,910,947	107,196,300	101,543,818	78,185	5,574,297
공 기 업 특 별 회 계	86,597,260	88,416,055	87,830,530	0	585,525
상 수 도	43,043,042	43,726,320	43,243,760	0	482,560
하 수 도	43,554,218	44,689,735	44,586,770	0	102,965
기 타 특 별 회 계	13,313,687	18,780,245	13,713,288	78,185	4,988,772
의 료 급 여	3,869,852	4,305,318	3,901,601	64,632	339,085
수 질 개 선	647,929	648,233	648,233	0	0
농 공 단 지	1,409,224	1,410,278	1,410,278	0	0
논 산 시 일 반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281,029	281,418	281,418	0	0
주 택 사 업	143,727	162,318	160,034	0	2,284
주 차 장 관 리	1,817,987	2,390,607	1,926,843	13,553	450,211
토 지 관 리	3,280,119	7,811,402	3,614,210	0	4,197,192
도 시 재 생	1,761,926	1,768,139	1,768,139	0	0
국 방 국 가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101,894	2,532	2,532	0	0
결 산 확 인 액	99,910,947	107,196,300	101,543,818	78,185	5,574,297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은 전년도 112,770,745천원보다 11,226,927천원이 적은 101,543,818천원이 수납되어 전년도보다 9.9% 감소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4.7%로서 전년도에 비해 0.6% 증가하였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01,543,818	101,543,818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2)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81,012,683	99,910,947	75,018,263	16,495,059	8,397,625
공 기 업 특 별 회 계	67,698,996	86,597,260	63,326,827	15,998,289	7,272,144
상 수 도	28,656,869	43,043,042	27,538,075	11,121,034	4,383,933
하 수 도	39,042,127	43,554,218	35,788,752	4,877,255	2,888,211
기 타 특 별 회 계	13,313,687	13,313,687	11,691,436	496,770	1,125,481
의 료 급 여	3,869,852	3,869,852	3,687,617	0	182,235
수 질 개 선	647,929	647,929	609,497	0	38,432
농 공 단 지	1,409,224	1,409,224	961,453	447,771	0
논산시일반산업 단지 조성 사업	281,029	281,029	239,461	0	41,568
주 택 사 업	143,727	143,727	115,362	0	28,365
주 차 장 관 리	1,817,987	1,817,987	1,768,440	48,999	548
토 지 관 리	3,280,119	3,280,119	3,280,037	0	82
도 시 재 생	1,761,926	1,761,926	1,029,569	0	732,357
국방국가산업단지 조 성 사 업	101,894	101,894	0	0	101,894
결 산 확 인 액	81,012,683	99,910,947	75,018,263	16,495,059	8,397,625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81,012,683천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8,898,264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9,910,947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이용, 전용은 없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1%에 해당하는 75,018,263천원이며, 이월액은 16,495,059천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4%에 해당하는 8,397,625천원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75,018,263	75,018,263	0

각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라.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단위 : 천원)

회 계 별	이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354	207,318,307	163	91,656,201	121	21,379,778	70	94,282,328
일반회계	325	190,823,248	155	85,523,540	116	20,218,173	54	85,081,535
특별회계	29	16,495,059	8	6,132,661	5	1,161,605	16	9,200,793
공기업	27	15,998,289	8	6,132,661	4	1,112,606	15	8,753,022
기 타	2	496,770	0	0	1	48,999	1	447,771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검사결과 결산액과 일치하였다.

3.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 금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가 또는 감 소 액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153,875,428	△63,714,678	23,423,301	87,137,979	90,160,750
자 활 기 금	846,350	17,148	49,588	32,440	863,498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4,454	452,605	501,005	48,400	457,059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800,000	9	9	0	800,009
재 난 관 리 기 금	3,517,163	△291,741	866,010	1,157,751	3,225,422
옥외광고정비기금	318,934	294,347	333,547	39,200	613,281
식 품 진 흥 기 금	376,403	47,352	60,081	12,729	423,755
농 촌 발 전 기 금	5,105,033	1,627,175	2,627,175	1,000,000	6,732,208
고 향 사 랑 기 금	649,888	1,419,094	1,419,094	0	2,068,982
청 사 건 립 기 금	10,000,000	10,000,986	10,000,986	0	20,000,9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 정 안 정 화 계 정)	96,157,947	△68,684,356	5,231,903	73,916,259	27,473,59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36,099,256	△8,597,297	2,333,903	10,931,200	27,501,959

2024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53,875,428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3,423,301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87,137,979천원을 공제한 90,160,750천원임.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평균 증 가 율
전년도말 조성액	67,763	53,269	16,478	170,734	153,875	22.8
당해연도 조성액	2,248	53,894	164,597	37,895	23,423	79.7
당해연도 사용액	16,742	84,756	10,341	54,754	87,138	51
당해연도말 조성액	53,269	22,407	170,734	153,875	90,160	14.1

논산시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22.8%p 증가하였고, 검사결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등 11개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90,160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63,714백만원 감소하였으며 본년도 기금의 지출액은 87,138백만원임.

4. 재무제표의 결산

2024회계연도 논산시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23	2024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4,064,743,482	4,143,066,170	78,322,688	1.9
I. 유 동 자 산	432,430,450	395,096,294	(-)37,334,156	(-)8.6
II. 투 자 자 산	16,442,941	18,151,670	1,708,729	10.4
III. 일 반 유 형 자 산	279,937,990	302,826,325	22,888,335	8.2
IV. 주 민 편 의 시 설	586,511,016	656,597,425	70,086,409	11.9
V. 사 회 기 반 시 설	2,744,248,493	2,766,440,804	22,192,311	0.8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5,172,592	3,953,652	(-)1,218,940	(-)23.6
부 채	38,915,724	32,323,096	(-)6,592,628	(-)16.9
I. 유 동 부 채	21,637,856	18,555,257	(-)3,082,599	(-)14.2
II. 장 기 차 입 부 채	0	0	0	0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17,277,868	13,767,839	(-)3,510,029	(-)20.3
순 자 산	4,025,827,758	4,110,743,074	84,915,316	2.1
I. 고 정 순 자 산	3,599,522,784	3,716,175,669	116,652,885	3.2
II. 특 정 순 자 산	121,667,094	65,255,483	(-)56,411,611	(-)46.4
III. 일 반 순 자 산	304,637,880	329,311,922	24,674,042	8.1

2024회계연도 말 논산시의 자산은 4,143,066,170천원으로 전년도의 4,064,743,482천원보다 78,322,688천원(1.9%) 증가하였고, 부채는 32,323,096천원으로 전년도의 38,915,724천원보다 6,592,628천원(16.9%)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계를 차감한 논산시의 순자산은 4,110,743,074 천원이며 전년도의 4,025,827,758천원보다 84,915,316천원이 증가하였음.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23	2024	전년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인건비	143,106,967	146,699,892	3,592,925	2.5
II. 운영비	267,146,874	302,097,594	34,950,720	13.1
III. 정부간이전비용	12,330,127	12,858,134	528,007	4.3
IV. 민간등이전비용	429,742,540	456,300,405	26,557,865	6.2
V. 기타비용	73,066,708	76,436,518	3,369,810	4.6
VI. 비용총계(B)	925,393,216	994,392,543	68,999,327	7.5
VII. 자체조달수익	142,906,732	131,014,289	(-)11,892,443	-8.3
VIII. 정부간이전수익	843,242,806	899,803,439	56,560,633	6.7
IX. 기타수익	19,919,267	20,776,532	857,265	4.3
X. 수익총계(A)	1,006,068,805	1,051,594,260	45,525,455	4.5
XI. 재정운영결과 (B-A)	(-)80,675,589	(-)57,201,717	23,473,872	(-)29.1

2024회계연도의 논산시의 총비용은 994,392,543천원이며 총수익은 1,051,594,260천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 (-)57,201,717천원이 발생하였고,

2024년에 논산시의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45,525,455천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68,999,327천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 전년보다 23,473,872천원이 증가하였음.

5. 성과보고서

논산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3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B/A)
합 계	11	97	206	196	10	95.1
의회사무국	1	1	2	2	0	100
기획감사실	1	2	6	6	0	100
예산실	1	2	6	5	1	83.3
미래전략실	1	4	7	7	0	100
홍보협력실	1	1	4	4	0	100
행정복지국	1	21	52	48	4	92.3
농산경제국	1	16	31	29	2	93.5
건설미래국	1	24	38	37	1	97.4
문화환경국	1	17	32	30	2	93.8
직속기관	1	7	26	26	0	100
사업소	1	2	2	2	0	100

논산시에서는 본 회계연도의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1개)-정책사업목표(97개)-단위사업(20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논산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206개의 지표수 중 196개의 성과지표를 초과달성 및 달성하여 95.1%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10개의 성과지표를 미달성하였음.

6. 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결산

가. 채 권

채 권 현 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상 환 소 멸 액	당 해 연 도 말 현 재 액
합 계	6,453,373	1,134,140	713,837	6,873,676
일반회계	6,355,116	1,124,140	693,837	6,785,419
특별회계	3,257	0		3,257
기 금	95,000	10,000	20,000	85,000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873,676천원으로 확인되었다.

나. 채 무

채 무 현 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상 환 소 멸 액	당 해 연 도 말 현 재 액
합 계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기 금	0	0	0	0

검사결과 채무는 0원으로 확인되었다.

다.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용 도		2023년도말 현 재 액	당해 연도 증감		2024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2,230,273,735	167,441,782	112,185,380	2,285,530,137
행정 재 산	소 계	2,004,817,671	166,665,848	29,457,078	2,142,026,441
	공 용 재 산	381,893,625	59,477,429	3,112,536	438,258,518
	공공용재산	1,615,534,580	107,102,689	26,140,072	1,696,497,197
	기업용재산	800,111	0	0	800,111
	보존용재산	6,589,355	85,730	204,470	6,470,615
일 반 재 산		27,035,220	775,934	329,464	27,481,690
건설중인재산		198,420,844	0	82,398,838	116,022,006

라. 물 품

본 년도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말 보 유 현 황	당해 연도 증감		2024년도말 보 유 현 황
		취 득	처 분	
수 량	1,816	68	25	1,859
금 액	15,450,564	1,079,806	479,354	16,051,016

Ⅲ. 개선 및 권고사항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목록

연번	제 목	개선 및 권고사항	관 련 부 서
1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 필요	미수납의 사유에 따라 강력한 징수 대책을 세우고 결손처분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결손처분하기 바람. 선진적이고 다양한 체납 관리 기법을 연구, 개발하여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기 바람.	농 촌 활 력 과 축 수 산 과 지 역 경 제 과 도 시 주 택 과 도 로 과 교 통 과 신 속 허 가 과 토 지 정 보 과 상 하 수 도 과 자 원 순 환 과 아동복지돌봄과 보 건 소 ※미수납액5천만원 이상
2	특별회계 세입 관리 부적정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도 누락없이 예산에 계상하기 바라고 특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의 경우 별도 수납 절차를 이행 하여 예금 잔액 불부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국 방 산 업 과
3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	예산 편성 후 변동 사항이 있을 시 현실에 따라 증감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 운영을 하기 바람.	환 경 과 투 자 유 치 과 도 시 주 택 과 교 통 과 토 지 정 보 과 도 시 재 생 과 주민생활지원과
4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자체세입원 징수 결정 시부터 환급이나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결정하여 납기내 징수를 독려하고 체납 사안별 실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 및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교 통 과 토 지 정 보 과 주민생활지원과

연번	제 목	개선 및 권고사항	관 련 부 서
5	민간보조금(시자체) 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 촉구	민간지방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의무 비율 기준을 재검토하여 명확한 자부담 적용을 하기 바람.	예 산 실
6	이월예산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구	철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미 래 전 략 실 안 전 총 괄 과 국 방 산 업 과 건 설 과 도 시 재 생 과 체 육 진 흥 과 관 광 과 평 생 학 습 도 서 관 ※ 예산현액 대 이월액 비율 30%이상사업
7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세출예산 집행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 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 하여 집행에 지연되는 요인이 없는지 점검, 집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주기 바람.	전 부 서 ※ 제출부서 : 투자유치과, 교통과
8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액 전액 미사용 반환 부적정	보조사업의 계획,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국 방 산 업 과 신 속 허 가 과 환 경 과 복 지 정 책 과
9	주요사업 추진 미흡	단위사업별 총 20억 이상, 연구용역사업비 건당 3억 이상의 사업 중 8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여 공사 중지 등으로 예산이 적재 적소에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미 래 전 략 실 안 전 총 괄 과 국 방 산 업 과 자 원 순 환 과 보 건 소

연번	제 목	개선 및 권고사항	관 련 부 서
10	2024년 본예산 전액 명시아월 부적정	사업 추진 과정 예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삭감 조정 등 필요한 조 치를 하기 바라며 신속한 예산 집행과 이월의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 전에 절차 이행, 사업별 재원 소요 시기 및 적정성을 판단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기 바람.	농 촌 활 력 과 도 시 재 생 과 상 하 수 도 과
11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집행 실적,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 요구 및 편성을 하기 바람.	도 시 주 택 과 (건 설 과)
12	기금의 간주예산 제도 활용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도 자치단체 세입 예산과 동일하게 최종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간주 처리예산 제도를 활용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 하기 바람.	도 시 주 택 과
13	세입세출외현금 분개오류	현재액의 현금과 일치하게 반환 시점에 따른 올바른 분개처리를 해주기 바람.	회 계 과
14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미흡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시 과거 실적치를 감안 하여 달성율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되도록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기 바람	전 부 서 ※ 제출부서 : 예산실

연번	제 목	개선 및 권고사항	관 련 부 서
15	공유재산(건물) 공제보험 추가 등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등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나 미가입한 건물에 대하여 재해복구 공제보험을 추가 등록하기 바람.	미 래 전 략 실 안 전 총 관 과 회 계 과 축 수 산 과 산 림 공 원 과 투 자 유 치 과 국 방 산 업 과 건 설 과 도 시 주 택 과 도 시 재 생 과 도 로 과 교 통 과 상 하 수 도 과 문 화 예 술 과 체 육 진 흥 과 관 광 과 환 경 과 100세 행복 과 아동복지돌봄 과 강 경 읍 성 동 면 광 석 면 노 성 면 부 적 면 연 산 면 별 곡 면 양 촌 면 채 운 면
16	중기공유재산관리 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불일치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같은 시기에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회 계 과 농 촌 활 력 과 투 자 유 치 과 교 통 과 관 광 과 보 건 소

1.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 필요

□ 현 황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순수납액 비율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합 계	13,492,857	577,788	33,359	544,429	299,799	12,648,629	4.0%
자치행정과	802	0	0	0	0	802	0.0%
안전총괄과	8,425	171	0	171	0	8,254	2.0%
아동복지돌봄과	64,755	900	0	900	0	63,855	1.4%
주민생활지원과	-466	0	466	-466	0	0	100.0%
복지정책과	40,510	6,487	0	6,487	0	34,023	16.0%
세무과	-20,105	0	23,496	-23,496	3,391	0	116.9%
100세행복과	31,761	6,311	8,115	-1,804	503	33,062	-5.7%
회계과	94,446	92,667	0	92,667	0	1,779	98.1%
민원과	33,109	2,294	0	2,294	0	30,815	6.9%
농촌활력과	336,938	77,659	0	77,659	0	259,279	23.0%
농산물유통지원센터	4,830	3,739	0	3,739	0	1,091	77.4%
축수산과	992,174	0	0	0	0	992,174	0.0%
산림공원과	3,131	17	0	17	0	3,114	0.5%
지역경제과	252,290	44,244	463	43,781	0	208,509	17.4%
건설과	19,214	3,563	0	3,563	0	15,651	18.5%
도시주택과	328,871	14,172	0	14,172	12,008	302,691	4.3%
도로과	224,867	28,548	0	28,548	0	196,319	12.7%
교통과	4,778,210	192,478	335	192,143	282,103	4,303,964	4.0%
신속허가과	870,068	49,577	0	49,577	0	820,491	5.7%
토지정보과	1,221,169	52	0	52	0	1,221,117	0.0%
상하수도과	2,829,941	0	0	0	0	2,829,941	0.0%
문화예술과	5,313	500	98	402	0	4,911	7.5%
체육진흥과	684	411	0	411	273	0	60.2%
환경과	26,075	6,851	0	6,851	0	19,224	26.3%
자원순환과	1,228,562	36,559	0	36,559	0	1,192,003	3.0%
보건소	92,645	1,453	98	1,355	0	91,290	1.5%
농업기술센터	2,964	3,252	288	2,964	0	0	100.0%
평생학습도서관	1,303	1,303	0	1,303	0	0	100.0%
읍,면사무소	20,371	4,580	0	4,580	1,521	14,270	22.5%

□ 문 제 점

- 2024년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85,639백만원) 대비 순수납액(79,284백만원)의 비율은 92.5%로 높은 편이나,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29,142백만원) 대비 순수납액(15,682백만원)의 비율은 53.8%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임.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13,160백만원 중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 규모는 12,64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순수납액의 비율은 4.0%의 낮은 징수율을 보임.
- 지난연도 수입 관리는 각 부서별로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체적으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미수납액에 대한 가장 큰 사유는 납세태만으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재산압류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미수납액이 전년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이중 상당부분이 소멸시효완성과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정리보류 되고 있음.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사유】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납액	사유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및부도	격리및입원	소송계류	자금압박
지난연도 수입	12,648,629	3,878,569	81,599	8,058,456	126,024	604	12,395	490,980

【지난연도 수입 정리보류액 사유】

(단위 : 천원)

구 분	정리보류액	사유별				
		배분금액부족	체납처분중지	소멸시효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지난연도 수입	299,799	26,172	1,191	97,464	105,021	69,949

□ 개선 및 권고사항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의 지속적,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간과 예산을 배정하고, 미수납액을 세부 원인별로 파악하여 세입예산의 상실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미수납액의 사유 중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이행과 공평 과세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무재산 및 행방불명의 경우처럼 결손처분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는 미수납액을 이월하는 것보다는 당해연도에 결손처분하여, 이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정정보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전년도에서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재산조회, 압류 물건의 다각화 및 징수권 소멸방지를 위한 적극적 납부 독려가 필요할 것이고, 선진적이고 다양한 체납관리 기법을 연구·개발하여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 각 부서 담당 직원의 직무 교육 강화, 주기적인 부과 징수, 지도 점검 등을 통한 체납징수율 제고로 세입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한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등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해 보임.

2. 특별회계 세입 관리 부적정

☐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현황

(단위 : 천원)

세입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B-C)	수납액 대비 예산액 (E=C-A)	비 고
계	101,894	2,532	2,532	0	△99,362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0	638	638	0	638	
711-01 순세계잉여금	1,894	1,894	1,894	0	0	
722-03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00,000	0	0	0	△100,000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회계법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의하면 ‘지방세와 그밖의 세입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위 현황과 같이 공공예금이자수입 638천원은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 또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00,000천원은 예산에는 계상하였으나 수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2024회계연도 결산 시 100,000천원의 예금 잔액 불부합 사유가 발생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세입원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세입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세입 수납 절차를 이행하여 예금 잔액 불부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3.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

☐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특별회계명	과 목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관	항	목			
합 계				3,255,306	8,820,183	3,754,679
의료급여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4	1,503	1,503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0	9,748	9,748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지난년도 수입	0	424,217	20,500
수질개선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0	304	304
농공단지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996	3,050	3,050
주택사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0	305	305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지난년도 수입	0	4,153	3,321
	보전수입등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58,727	71,835	71,835
주차장관리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0	2,959	2,959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지난년도 수입	80,000	447,759	36,304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과태료	차량관련 과태료	100,000	301,902	249,593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0	376	376
토지관리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500,000	3,263,929	793,614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지난년도 수입	2,500,000	4,200,148	2,500,381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부담금	부담금	13,579	80,783	53,674
도시재생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	7,212	7,212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 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 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이 있으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한 과목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과 예산현액이 크게 차이나는 과목의 세입예산 편성이 부적정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모든 세입은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세입 예산액을 전망하여 계상하고 예산 편성 후 특수요인 발생 등으로 변동 시에는 추경 시 현실에 맞게 증감 정리하여 적절한 예산 운영을 기하기 바랍니다.

4.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 현 황

(단위 : 천원, %)

회계 연도	특별회계명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A-D)	징수율 (D/A)
			수납총액 (B)	환급액 (C)	실제 수납액 (D=B-C)		
2023	의료급여	417,870	61,160	0	61,160	356,710	14.6
2024		435,468	31,751	0	31,751	339,085 *결손액 64,632	7.2
2023	주차장관리	769,352	241,155	64	241,091	467,944 *결손액 60,317	31.3
2024		752,621	288,856	0	288,856	450,211 *결손액 13,554	38.3
2023	토지관리	7,419,691	2,018,186	0	2,018,186	5,401,505	27.2
2024		7,550,086	3,352,894	0	3,352,894	4,197,192	44.4

☐ 문 제 점

- 특별회계는 특정의 수입 지출을 구분하여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독립시킨 회계단위로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에 필요할 때에 법률과 조례로 설치하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령에 의한 자체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이자 수입 및 그밖의 수입금임.
- 특별회계의 특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의 징수실적이 높아야 함에도 위의 현황과 같이 23년도 특별회계 징수율 대비 24년 특별회계 징수율이 제고되었으나, 의료급여 징수율이 여전히 저조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자체세입원 징수 결정 시부터 환급이나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으로 징수 결정하여, 납기 내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체납 시 체납 사안별로 실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고, 압류 등 권리 보전조치로 채권을 확보, 회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민간보조금(시자체)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 촉구

☐ 민간보조금 지급 현황(2024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민간 보조금	400	23,320	179	9,922	19	1,612	49	1,801	27	2,016	39	1,590	87	6,379

☐ 문 제 점(검토사항)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 중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체, 개인에 지원하는 사업비라 할 수 있음.

- 논산시는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비롯한 6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을 적용하고 민간단체 국외연수비, 워크숍, 역량강화, 한마음대회 등 행사성 사업에 한하여는 총 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 적용 또는 격년제 추진을 지원하고,
농수산물, 축산, 임업 관련하여서는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30% ~ 70% 까지 자부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 장애인 단체, 보훈단체, 노인회 등 재정기반 취약단체, 시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도 단위 및 전국단위 행사 단체, 시의 정책 방향 등과 부합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은 자부담 예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시에서 이런 민간지방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기준을 마련한 것은 보조사업에 일정 비율의 자부담을 시킴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대신에 보조금 예산 편성의 건전성 유지 및 선심성 예산을 불식시킴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됨.
- 그동안 예산부서의 부단한 노력으로 대부분의 보조사업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법적 기준과 절차에 맞게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아직도 많은 민간보조사업이 시 정책사업의 기준 적용 및 면제 대상의 적정 적용 또한 경상보조,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한 자부담이 0% ~ 10% 이내에서 이루어져 논산시 지방보조금 운영 의무 비율 기준에 실제 부담액은 매우 미흡하고 저조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논산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의무 비율 기준을 재검토하여 명확한 자부담 적용으로 책임성,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월예산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구

☐ 현 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이월액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율 (%)	비 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024	1,296,733	190,823	85,523	20,218	85,082	40,700	증27.1%	
2023	1,221,197	150,123	49,138	35,369	65,616	21		
2022	1,297,708	150,102	55,722	25,859	68,521			

☐ 문 제 점

- 세출예산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 회계연도 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이월하는 등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나
- 현황에서와 같이,
2024년도 이월액은 190,823백만원으로 2023년도 이월액 150,123백만원 대비 40,700백만원이 대폭 증가되어 27.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월예산의 과다 발생 시 사업이 제때 실행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월된 금액만큼

의 예산 지원과 활용을 정체시켜 재정의 합리적 사용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사업효과와 우선순위, 주민수혜도 등을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지연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저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7.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세출예산 집행

☐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분기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기별 회계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지출액	집행률	지출액	집행률	지출액	집행률	지출액	집행률	지출액	집행률
합계	318,009	24.3	247,613	18.9	218,764	16.7	288,911	22.1	1,073,297	81.9
일반회계	314,312	24.2	244,718	18.9	218,161	16.8	284,418	21.9	1,061,609	81.9
의료급여 특별회계	2,424	62.6	197	5.1	178	4.6	888	22.9	3,687	95.3
수질개선 특별회계	307	47.4	75	11.6	25	3.9	202	31.2	609	94.0
농공단지 특별회계	54	3.8	863	61.2	23	1.6	21	1.5	961	68.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52	18.5	0	0.0	66	23.5	121	43.1	239	85.1
주택사업 특별회계	52	36.4	19	13.3	23	16.1	21	14.7	115	80.4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0	0.6	213	11.7	7	0.4	1,538	84.6	1,768	97.2
토지관리 특별회계	753	23.0	1,026	31.3	247	7.5	1,254	38.2	3,280	100.0
도시재생 특별회계	45	2.6	502	28.5	34	1.9	448	25.4	1,029	58.4

☐ 문 제 점

○ 위 현황표에 의거,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기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1분기의 집행률(24.3%)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으로 긍정적이나 2분기, 3분기는 집행률이 저조한 반면, 연말 4분기에 이르러 22.1%의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된 사실을 확인함.

특히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연말 4분기에 84.6%의 예산을 몰아 집행하였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분기에 43.1%, 토지 관리 특별회계는 38.2%, 나머지 특별회계 대부분이 연말 4분기에 20% 이상을 집행하는 등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 집행으로 보기 어려움.

- 연말 예산 집행 시 시급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사업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실과소에서는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 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배정된 예산이 집행에 지연되는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액 전액 미사용 반환 부적정

☐ 현 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 액	미사용 반납액			시비	전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계	5건	3,524,167	1,854,042	1,801,595	52,447	1,670,125	
국방 산업과	호국문화체험 단지 조성사업	3,186,000	1,593,000	1,593,000	0	1,593,000	사업중단
신속 허가과	석재산업 환경 피해 저감사업	19,802	13,861	11,315	2,546	5,941	보조사업자의 사업 중단으로 전액 반납
환경과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60,000	39,000	30,000	9,000	21,000	신청자 없음
복지 정책과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238,974	188,790	167,280	21,510	50,184	'24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지정 제공기관 부재로 인한 미운영
복지 정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교육협력)	19,391	19,391	0	19,391	0	'24년도 7월 논산미래광장 누수 피해로 인한 미운영

☐ 문 제 점

- 2024회계연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전액을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미사용하고 반납한 사업은 5건에 1,854,042천원임.
-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추경 예산에 감액 등의 조치로 시비 부담분의 신규 재원 활용 등 세출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이런 조치 없이 보조사업비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보조사업 예산 운영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사업의 계획,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어렵게 확보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9. 주요사업 추진 미흡

☐ 주요사업 진행 현황

(단위 : 천원)

계		진도율							
		10% 이하		20% 이하		30 ~ 49% 이하		50% 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	189,075,554	5	102,029,591	3	43,627,000	2	13,603,000	3	29,815,963

※ 사업조서(종합진도 20%이하) - 별첨

☐ 문 제 점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단위사업 별 총 20억 이상 조사, 연구용역 사업비는 건당 3억 이상인 사업으로써 다년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논산시의 핵심 사업이라고 판단됨.

○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문화예술과 소관 국가문화재 보수 사업과 체육진흥과 소관 논산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나 기타 안전총괄과 소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지산지구)은 준공기한이 2025. 12. 31.임에도 진도율 30%에 머무르고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진도율 20%이며,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사업 2건은 공사기간이 2026. 12. 31.임에도 진도율 5%, 10%로 사업 추진이 저조하고,

보건소 소관 2025. 6. 30. 준공 예정인 공공산후 조리원 조성사업은 진도율 37%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그린뉴딜)은 준공기한이 2026.12.31.임에도 진도율이 전혀 없으며 주요사업 대부분이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상기 사업은 논산시의 핵심 주요 사업으로 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로 장애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하여 공사 중지 등으로 필요한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어 적재 적소에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진도 20%이하 주요사업조서

(단위 : 천원)

주관 부서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추진 상황	종합 진도 (%)	부진사유
미래 전략실	대동누리 청년 군자마당 (보조)	29,980,000	2022-01-01 ~ 2026-12-31	설계용역 (조경, 건축)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분야 협의사항 반영으로 인한 추가 절차 이행
미래 전략실	대동누리 청년 군자마당 (자체)	8,220,000	2022-01-01 ~ 2026-12-31	사업부지 확보(22%), 설계 관련 파생 용역 추진	10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협의 지연과 도시 관리 계획 결정(변경) 지연
미래 전략실	산노리 자연 문화 예술촌 조성사업	25,600,000	2017-01-01 ~ 2026-12-31	사업부지확보 완료,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	20	원가상승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한 사업 계획 변경 및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안전 총괄과	소방관서 및 의소대 기능보강	3,027,000	2024-01-01 ~ 2025-12-31	추진중	20	공공디자인,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국방 산업과	호국문화 체험 단지 조성사업	15,000,000	2021-01-01 ~ 2025-12-31	사업중단	20	*2024년 제1회 논산시 시정조정 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추진 중단 결정
국방 산업과	국방대학교 전원 마을 조성 사업	13,160,000	2021-01-01 ~ 2025-12-31	실시설계 용역 완료	10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사업 지연 *전략 및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기간 소요 (주민의견 첨부 등) *실시설계용역 기간 지연
자원 순환과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사업 (그린뉴딜)	42,395,000	2021-01-01 ~ 2030-10-31	터키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	5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및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지연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그린뉴딜)	8,274,591	2022-12-01 ~ 2026-12-31	보건기관 리모델링사업 (2개소 진행중)	0	*예산 확보 시기 상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 예산 확정 : 2024년 12월 - 현재 실시설계중

10. 2024년 본예산 전액 명시이월 부적정

☐ 현 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사유
계	4건		568,760	0	568,760	
농촌활력과	친환경청년 농부 시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40,000	0	40,000	사업포기 대상 발생에 따른 추가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지연
농촌활력과	친환경농업 시설보강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30,000	0	30,000	시공업체, 사업내용 및 필지 변경 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
도시재생과	광석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시설비	487,000	0	487,000	다년도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 2024.3.4.착공
상하수도과	상수도 보급지역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사무관리비	11,760	0	11,760	사업기간 2024.7.1. ~ 2025.6.30. 인 사업으로 명시이월

☐ 문 제 점

- 세출예산 편성 시 본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은 시의 다양한 정책사업
중 우선하여 조기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
따라서 당초 편성된 사업의 조기 집행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업계획
에 따라 적극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
- 위 4개 명시이월 사업 현황과 같이 사업 추진 과정에 부득이한 사정
이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삭감조정 등 필요한 예산 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런 조치 없이 회계연도 내내 예산을 정체시켜 다른 시
급한 사업에 대한 재원의 합리적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신속한 예산 집행과 이월의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추진 전에 절차이행, 사
업별 자원 소요 시기 및 적정성을 판단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도시 주택과	지역 및도시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 위탁 사업비	435,000	144,000	0	2024.5.17.	가로등 전기요금을 5,6월 납부(예산액 224백만원) 해야하나, 집행잔액이 8천만원으로 1회 추경 의결일(6.28.) 이후 지출 시 연체료 발생하여 전용하여 지출하고자 함
			공공 운영비	577,000	0	144,000		

[참고]

(단위 : 천원)

통계목	본예산	전용	1회추경	3회추경	최종집행 가능예산	집행액	잔액	비고
402-03 민간위탁 사업비	435,000	△144,000	△155,000	0	136,000	126,200	9,800	
201-02 공공운영비	577,000	144,000	750,000	△67,000	1,377,000	1,358,045	18,955	

☐ 문 제 점

- 세출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이는 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가 발생되어 세출예산 과목에서 잔액 발생이 확실하고 세출의 부족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에 예산 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 위 현황표에서 보듯이 도시주택과 소관 가로등 유지관리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매년 필히 확보 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이미 전년도의 가로등 전기요금 집행액을 근거하여 2024년도 소요 예산을 판단하고, 혹여라도 재원이 고려되었다면 최소한 1회 추경 전까지는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판단됨.

☐ 권고사항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등의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집행실적,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 요구 및 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금의 간주예산제도 활용

☐ 옥외광고정비기금 현황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과목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비 고
계	381,934	652,481	652,481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	11,197	11,197	
224-07 그외수입	0	250,000	250,000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옥외광고 수익금
714-01 예치금 회수	318,935	318,934	318,934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과목	지출계획액	지출액	비 고
계	381,934	652,481	
401-01 시설비	60,000	39,200	
602-01 일반예치금	321,934	613,281	

☐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3항에 의하면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위 현황과 같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024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원사업인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250,000천원을 배분(2024. 12. 20. 송금) 받았으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음.

- 2024년도 최종 추경인 제3회 논산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4. 12. 20. 의회에서 의결되어 추가로 변경할 일정이 없었으나,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으므로 2024 간주예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도 포함하여야 맞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현실에 맞도록 최종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간주처리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바랍니다.

13. 세입세출외현금 분개오류

☐ 현 황(일반회계)

[현재액별]

(단위 : 원)

관서	종류별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증가액	지출액		
본청	보증금	계	6,907,140	0	0	0	6,907,140	
		장기	-63,353,700	0	0	0	-63,353,700	
		단기	70,260,840	0	0	0	70,260,840	
보건소	보증금	계	0	0	0	0	0	
		장기	1,037,847	0	0	0	1,037,847	
		단기	-1,037,847	0	0	0	-1,037,847	
취암동	보증금	계	0	0	0	0	0	
		장기	149,600	0	0	0	149,600	
		단기	-149,600	0	0	0	-149,600	
보건소	보관금	계	0	0	0	0	0	
		장기	-25,908,830	0	0	0	-25,908,830	
		단기	25,908,830	0	0	0	25,908,830	

[종류별]

(단위 : 원)

관서	현금명	관리 부서	보관 근거	보관 기간	최초 보관일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본청	계	계				6,907,140	0	0	0	6,907,140
	하자보수 보증금	장기	지자체 회계관리에			5,197,140	0	0	0	5,197,140
	기타보증금	단기	관한훈령 61조			1,710,000	0	0	0	1,710,000

☐ 문 제 점

- 세입세출외현금의 보증금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본청 소관 보증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잔고증명과 일치된 6,907,140원이나 반환시점에 따라 장기 △63,353,700원, 단기 70,260,840원으로 구분되어 이전 회계연도부터 분개오류된 금액으로 전산 프로그램상 계속되어 이월되었음.

- 또한 보건소 보증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0원이나 장기 1,037,847원, 단기 △1,037,847원으로 구분되어 이는 현재액과 전혀 근거 없는 계수임.

취암동도 보건소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현재액은 0원이나 장기 149,600원, 단기 △149,600원으로 구분되어 존재하지 않는 계수 금액으로 결산되었음.

- 보건소 소관 보관금도 동일하게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말 현재액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액은 0원이나 장기 △25,908,830원, 단기 25,908,830원으로 분개되어 있음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수년 전에 분개 오류로 발생한 수치가 이월된 것으로 이전 결산 자료에 대한 마감으로 인하여 과거 자료를 현재액과 일치된 금액으로 수정할 수 없다면 차기년도 결산 이후부터 현재액의 현금과 일치하게 반환 시점에 따라 구분하여 분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미흡

☐ 주요성과 및 정책 사업 현황

(단위 : 개)

실국명	성과목표						비 고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1	97	206	28	168	10	
의회사무국	1	1	2	0	2	0	
기획감사실	1	2	6	0	6	0	
예 산 실	1	2	6	0	5	1	
미래전략실	1	4	7	0	7	0	
홍보협력실	1	1	4	0	4	0	
행정복지국	1	21	52	5	43	4	
농산경제국	1	16	31	6	23	2	
건설미래국	1	24	38	5	32	1	
문화환경국	1	17	32	8	22	2	
직속기관	1	7	26	2	24	0	
사 업 소	1	2	2	2	0	0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의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임의로 성과계획서 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실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성과를 분석하여야 함.
- 또한 목표치 설정 시에는 과거 실적치를 감안하고 달성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한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하나,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실정에 맞지 않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목표치 설정 시 사전분석 없이 전년도 수치를 반복하거나 근거 없이 증감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많았으며,
 - 성과 미달성, 130% 이상 초과 달성 성과지표의 경우 원인분석은 하였으나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전년도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타당한 성과지표의 설정, 실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산정, 적극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등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기 바랍니다.

15. 공유재산(건물) 공제보험 추가 등록

☐ 공유재산(건물) 재해복구 공제보험 가입 현황

(단위 : m², 백만원)

부서명	공제 가입 대상			공제 가입			공제 미가입		
	개소수	건축면적	건물금액	개소수	건축면적	건물금액	개소수	건축면적	건물금액
계	773	297,228	540,217	578	251,294	458,101	195	45,934	82,116
미래전략실	6	648	1,749	2	150	590	4	498	1,159
안전총괄과	17	5,242	8,392	2	336	430	15	4,906	7,962
회계과	22	20,041	24,757	19	19,426	24,554	3	615	203
농촌활력과	1	1,359	2,665	1	1,359	2,665	0	0	0
농산물유통 지원센터	4	3,450	4,610	4	3,450	4,610	0	0	0
축수산과	2	70	719	1	69	8	1	1	711
산림공원과	80	9,558	33,787	66	8,243	30,838	14	1,315	2,949
지역경제과	25	8,314	18,301	25	8,314	18,301	0	0	0
투자유치과	12	10,722	19,209	1	999	691	11	9,723	18,518
국방산업과	3	1,211	902	2	340	205	1	871	697
건설과	27	9,257	15,397	19	7,618	14,488	8	1,639	909
도시주택과	24	12,777	6,327	12	10,746	5,503	12	2,031	824
도시재생과	49	12,846	26,833	33	10,550	22,069	16	2,296	4,764
도로과	3	958	916	2	939	901	1	19	15
교통과	7	1,335	2,270	5	512	1,924	2	823	346
상하수도과	57	11,510	30,864	20	9,489	29,231	37	2,021	1,633
문화예술과	21	14,779	49,440	13	9,074	21,031	8	5,705	28,409
체육진흥과	36	30,958	66,973	26	26,162	64,556	10	4,796	2,417
관광과	122	23,330	61,839	106	19,601	56,211	16	3,729	5,628
환경과	26	13,459	2,043	12	13,135	972	14	324	1,071
자원순환과	21	10,277	30,368	21	10,277	30,368	0	0	0

부서명	공제 가입 대상			공제 가입			공제 미가입		
	개소수	건축면적	건물금액	개소수	건축면적	건물금액	개소수	건축면적	건물금액
인구청년 교육과	2	4,142	6,524	2	4,142	6,524	0	0	0
복지정책과	4	4,369	8,357	4	4,369	8,357	0	0	0
100세 행복과	14	7,769	7,565	7	5,686	4,916	7	2,083	2,649
아동복지 돌봄과	8	2,329	2,726	5	866	1,697	3	1,463	1,029
농업기술센터	12	8,295	7,326	12	8,295	7,326	0	0	0
보건소	51	24,726	31,368	51	24,726	31,368	0	0	0
평생학습 도서관	7	17,590	46,911	7	17,590	46,911	0	0	0
강경읍	7	3,221	1,999	6	3,208	1,991	1	13	8
연무읍	8	3,029	1,287	8	3,029	1,287	0	0	0
성동면	6	1,108	549	4	852	482	2	256	67
광석면	14	2,503	3,661	13	2,376	3,641	1	127	20
노성면	4	914	696	3	799	680	1	115	16
상월면	5	1,296	2,339	5	1,296	2,339	0	0	0
부적면	7	1,836	4,102	6	1,593	4,092	1	243	10
연산면	11	1,799	403	9	1,680	375	2	119	28
벌곡면	9	2,186	2,538	8	2,171	2,528	1	15	10
양촌면	8	890	464	7	806	461	1	84	3
가야곡면	5	1,095	635	5	1,095	635	0	0	0
은진면	8	1,113	319	8	1,113	319	0	0	0
채운면	9	1,562	472	7	1,458	411	2	104	61
취암동	9	3,355	1,615	9	3,355	1,615	0	0	0

□ 문 제 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등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제1항에 의하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경상도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건물 등에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논산시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재해에 대비하고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 공제보험 등록을 하고 있는바, 위 현황과 같이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보험 가입 대상 건물은 773개소이며, 이중 공제보험에 가입한 건물은 578개소로 74.8%를 차지하고 있고 공제보험에 미가입한 건물은 25.2%인 195개소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공제보험에 미가입한 195개소에 대해서는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공제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화재, 풍·수·설해, 폭발, 지진 등의 재난으로부터 미리 대비하고, 재난으로 인한 市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유건물의 재해복구 공제보험에 추가 등록해 나가기 바랍니다.

16.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불일치

☐ 2024 공유재산 취득계획 현황

(단위 : m², 백만원)

2024~2028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중 2024년 계획						2024 공유재산 관리계획 포함 여부	비 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금액	취득 목적		
계	12건		48,895	39,752			
건물	부적면 덕평리 41-2	대	990	3,000	과학영농조합 분석센터건립	포함	
토지, 건물	강경읍 남교리 66-2 일원	대	4,198	2,235	(구)한전사옥 취득	포함	
토지	등화동 537-4 일원	답	19,854	1,000	동물복지문화 센터 조성	포함	
건물	강경읍 중앙리 40-2 일원	대	755	2,800	논산근대역사 문화촌 신축	미포함	관광과
토지	양촌면 산직리 305-1	전	2,774	45	산직1리 쌈지 공원 조성	포함	
토지	반월동 182-4 일원	대	6,286	1,233	반월동 공영 주차장 조성	포함	
토지	취암동 296-1 일원	답	5,583	452	취암동 공영 주차장 조성	미포함	교통과
건물	양촌면 인천리 43-17	대	462	1,500	119지역대 청사 신축	포함	
토지, 건물	강경읍 중앙리 16-5 일원	대	857	5,000	강경근대역사 문화거리	포함	
건물	성동면 원북리 857-2 일원	대	1,867	3,400	논산산단 공동주택건립	미포함	투자유치과
토지, 건물	양촌면 인천리 42-3 일원	대	3,769	9,087	외국인근로자 숙소 조성	미포함	농촌활력과
건물	지산동 781 일원	대	1,500	10,000	충남공공산후 조리원 조성	미포함	건강증진과

□ 문 제 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논산시에서는 2023. 11월 2024 회계연도 본예산안 상정 시 2024~2028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24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2024~2028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2024 취득계획에는 과학 영농 조합분석센터건립 등 12건 사업을 신규 취득 대상 재산으로 명시하였으나,
 - 2024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계획에는 과학영농조합 분석센터건립 등 7건만 포함하고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신축 등 5개 사업은 포함하지 않아 누락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같은 시기에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는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